


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
134, 4층 (서소문동)

공증인 배원건 사무소

TEL : 3789-6313
FAX : 3789-6310

등부 2024년 제 3348 호

인 증 서

정 관



이 정관은 본 회사에 비치된 것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06 . 18 .

사회복지법인 창강원
대표이사 안병서 (법인인감)



사회복지법인 창강원



정 관



사회복지법인 창강원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회복지법인 창강원”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
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331-6에 둔다.

제 4조 (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노인복지법 제 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운영 및 지원
2. 노인복지법 제 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지원
3.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자산 및 회계

제 1절 자 산

제 5조 (자산구분)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자산은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별표 제 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2. 부동산
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
제 6조 (자산의 관리) ① 기본재산을 취득·매도·증여·교환·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7조 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 사업의 수입금, 정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절 회 계

제 8조 (회계의 구분 등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 법인의 일반회계,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한다.

제 9조 (회계의 처리)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 10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- 제 1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 1월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제 12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3조 (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- 제 14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- 제 15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1. 대표이사 1인
 2. 상임이사 1인
 3. 이사 7인(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)
 4. 감사 2인
- 제 16조 (임원의 선임) ①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선임한다.
 ③이사정수의 1/3(소수점 이하는 버림)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 ④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.
- 제 17조 (임원 선임의 제한)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
- 제 18조 (임원의 임기등)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 19조 (임원의 직무)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.
 ② 대표이사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

1.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4.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 20조 (대표권의 제한)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- 제 21조 (임원의 대우)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 22조 (겸직 금지)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4 장 이 사 회

- 제 23조 (이사회 구성)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- 제 24조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8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9.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

- 제 25조 (이사회와 소집 등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제 26조 (이사회와 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27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금지)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28조 (의결 제척사유)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 29조 (이사회 회의록)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

제 5 장 수익사업

제 30조 (수익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부동산 임대사업

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제 31조 (수익의 처분 및 관리)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 사업 및 공익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2.>



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

제 32조 (사무국)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3조 (상근임직원)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.

② 상근임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 34조 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5조 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6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제 8 장 공 고 방 법

- 제 37조 (공고의 방법)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 신문에 실는다.
- ② 제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- ③ 이 법인은 결산공고 및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주무관청, 국세청 및 당 법인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. <신설 2021.12.22.>

제 9 장 보 칙

- 제 38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민법,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- 제 39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0 장 기 부 금 단 체 의 무 사 항

- 제 40조 (회계의 공개) 이 법인은 결산 공개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주무관청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한다. (주무관청 및 국세청 결산 자료제출일은 3월31일까지 제출한다.)
- 제 41조 (기부금단체 의무사항) 1. 이 법인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의무를 수행함에,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창강원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. (단, 기부금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.)
2. 사회복지법인 창강원 홈페이지주소는 <http://www.changkangwon.kr> 개설 운영한다.
3. 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%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.
4.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현재의 기본재산 등) 이 법인 현재의 기본재산, 임원은 별표 1내지 2와 같다.

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

(2024.05.02. 개정)



구 분	규모(m ²)	평가가액(원)	비 고
중금채		6,625,160,000	기업은행
국고채		1,500,000,000	국고채
토지채		900,000,000	토지주택공사
주 식	110,000주	550,000,000	창강산업(주)
토 지	16,552	250,391,250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산11-1
	877	23,568,885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1
	730	19,618,342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2
	13,188	212,040,484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3
	535	8,867,326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4
	21	348,063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5
	365	6,047,106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6
	1,965	29,725,640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8
	3,216	86,428,204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9
	1,217	14,159,390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246-4
건 물	3,817.56	3,939,170,600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302-3
건물(증축) 2021.12.22.개정	829.94	2,447,287,800	
부동산 (APT)	84	886,839,700	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아파트 17동 904호
구축물		7,854,000	여주시 가남읍 삼승리(지하수)
합 계		17,507,506,790	



등부 2024년 제3348호

인 증

위 정 관에 기재된 촉탁인 사회복지법인 창강원 대표이사 안병서의 대리인 신경순은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
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
림없음을 인정하였다.

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

2024년 6월 2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

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 배원건 사무소

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4, 4층 (서소문동)

공증인

이근기

(인)

